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397호(號) 1913(大正 2)년 11월 25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78호(號)

1913(大正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25호(號) 일본·만주 연락운수 여객 및 수하물 임률규칙 [日滿聯絡運輸旅客及手荷物賃率規則] 제1편(編) 임률적용규칙(賃率適用規則) 중(中) 아래 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한다.

1913(大正 2)년 11월 25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백작(伯爵) 데라우치 마사타케(寺內正毅)

- 제13조 1.내 중 「역(驛) 앞으로」를 「역(驛) 앞 또는 이등[等] 역(驛)에서」로 개정(改正)한다.
- 동(同)조 「6」을 「7」로 고치고, 「5」 다음에 아래[左]의 1호(號)를 부가(附加)한다.
 6. 수매(數枚)의 승차권(乘車券)을 제출(提出)하여 수하물을 탁송(託送)하는 경우, 당해(當該) 승차권(乘車券)의 등급(等級)이 동일(同一)할 때는 1통(一通)의 수하물증서(手荷物證書)에 의하여 수하물을 접수(接受)할 수 있다. 승차권의 등급이 다를 때는 각각(各各) 별도(別途)의 수하물증서를 발행(發行)해야 한다.